

외교분야 증장기계획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유웅조

Tel. 788-4551/Fax. 788-4559

E-mail: wyoukr@nars.go.kr



요 약

질의 요지

○ 외교분야 중장기 계획현황

(회답일 2016.11.22)

■ 조사·분석 방향

- 외교분야 중장기 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 주 요 내 용

- 외교분야 중장기 계획 및 추진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대통령 임기와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일정을 맞추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모든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보고된 사항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셋째, 여러 행정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각 행정부처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외교분야의 경우 각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바, 외교관련 기본계획은 지역 및 국가별로 통합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행정부처 구조를 개선하여 행정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이기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목 차

1. 개요	1
2. 외교분야 주요 중장기 계획	1
3. 외교분야 중장기 계획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1



국회입법조사처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외교분야 중장기 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2. 외교분야 주요 중장기 계획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은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함
 - 동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 점검함
 - 동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함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외교부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 규모특성에 따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함
- 「공공외교법」 제6조에 의거하여 외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동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시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함
 - 그리고 외교부는 제7조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3. 외교분야 중장기 계획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 외교분야 중장기 계획은 해당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대통령 임기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현재 외교분야 중장기 계획은 자체 일정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및 이에 따른 예결산 일정과 차이가 있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수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둘째, 외교부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국회의 역할 미흡
 -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계획이 마련되고 수정될 경우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계획에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어 국회차원의 검토가 미흡할 수 있음
 - 또한 “국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국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에 명확한 내용이 없음. 가령 검토 또는 수정의견 제시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의 경우 통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가령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경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기관이고 기타 행정부처가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병렬적으로 조합할 수 있음. 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으나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조망에 의거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대통령 임기와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일정을 맞추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모든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보고된 사항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셋째, 여러 행정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각 행정부처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외교분야의 경우 각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바, 외교관련 기본계획은 지역 및 국가별로 통합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행정부처 구조를 개선하여 행정부처 간 칸

막이와 부처이기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